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복지용구사업소 “양지복지센터”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력을 향상시켜 기관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센터와 이용자, 직원에게 모두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)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,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 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.

가) 구입방식 :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
나) 대여방식 :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

제4조(소재지) 기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19 코스마@301호에 위치한다.

제5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가) 계약기간 :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초하여 수급자(보호자)의 요구에 따른 기간을 정한다.

나) 계약목적 : 수급자가 지정된 복지용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유지 및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다) 복지용구 급여비용 및 유의사항

1) 급여비용 본인부담률(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료)

일반 대상자	감경		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	보험료 순위 25% 이하	보험료 순위 25%초과50%이하		
15%	6%	9%	6%	면제

2) 급여비용 연 한도액 :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, 한도액 - 160만원

3) 최대 구입개수 제한 : 미끄럼방지양말 - 연 6켤레, 간이변기 - 연 2개, 안전손잡이 - 연 10개, 자세변환용구 - 연 5개

미끄럼방지매트 - 연 5개

요실금팬티 - 4개, 경사로(실내용) - 6개

성인용보행기 - 2개

4) 복지용구 이용 시 유의사항

- ① 사용 가능 헛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, 형태,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헛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헛수 내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,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- ③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다.
- ④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 용구 일부 품목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.
- ⑤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·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,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.
- ⑥ 복지용구 품목 중 타 법령에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된다.
 - 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: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
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: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- ⑦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 헛수가 경과한 제품 및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를 최소한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헛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- ⑧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⑨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의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.

라)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) 권리

-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지정된 제품을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다.
- ②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③ 대여제품의 경우 필요치 않을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- ④ 사용 중 제품에 이상이 발생 할 시 A/S 요청을 할 수 있다.

2) 의무

- ① 대여제품 사용 중 수급자가 시설 또는 병원 입원 시 기관에 연락하여

야 한다.

- ② 대여제품 사용 중 수급자가 사망하면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.
- ③ 대여제품 사용 중 고장 발생 시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.
- ④ 대여제품은 기관의 재산이므로 고의로 파손하거나 버리지 않는다.

마) 계약의 해지

- 1) 대여제품 이용 중 시설 또는 병원 입원 시 기관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한다.
- 2) 사용이 불필요한 용구는 반납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다.

제6조(서비스 내용)

가) 급여종류

- 1) 판매제품 :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(양말, 미끄럼방지매트), 간이변기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팬티, 구강세척기(마우스피스형), 기저귀센스, 배회감지기(태그형), 고관절보호대, 낙상알림시스템
- 2) 대여제품 : 수동침대, 전동침대, 수동휠체어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, 이동욕조
- 3) 구입 또는 대여품목
: 욕창예방매트리스, 경사로(실외용), 경사로(실내용), 이송보조기기
대화형 정서지원기기

나) 급여제공방법

- 1) 판매 :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의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판매한다.
 - 2) 대여 :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의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여한다.
- 단, 의료급여, 기초수급자의 경우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은 후 판매 또는 대여한다.

제7조(제품안내)

가) 취급제품의 홍보, 안내, 정보게시

- 1) 제품의 홍보 : 건강보험공단 제품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

2) 제품의 안내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안내.
안내책 비치

3) 제품 정보게시 : 홈페이지 e-Book을 통한 안내

급여종류 및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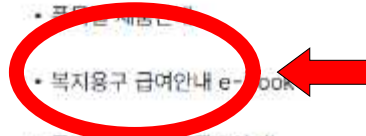
• 재가급여·시설급여

• 복지용구

• 기타 서비스

• 복지용구 급여안내 e-book

•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



제8조(제품유통)

가) 배송방법 : 배송은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.
특수한 경우 택배나 제조회사에서 직접 배달.

제9조(제품소독)

가) 대여제품은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한다.

제10조(제품사후관리)

가) 수리 및 유지보수관리

1) 고장접수

① 유선 : 051-703-6650

② 휴대전화 : 010-8874-3020

③ 방문접수 :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19 301호(코스마@)

2) 분석

① 유선을 통한 제품 고장을 분석하여 검토 조치요령을 확인

② 유선 상 고장유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출장하여 검토 및 제품 회수

3) 회수

① 유선 조치나 현장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회수

② 회수 시 대체용품이 필요하면 수리기간동안 대여

4) 사후처리

① 수리 된 용품을 전달하며, 수리내역 설명

② 재발방지를 위한 올바른 제품사용방법 안내

③ 월 1회 주기적으로 확인(유선 및 방문점검)

나) 처리기한 : a/s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를 기준으로 하며,
수리기간은 제품에 따라 틀려지므로 점검 후 안내